|  |  |  |
| --- | --- | --- |
| **식품안전 발췌검사 관리방법**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령 제15호  <식품안전 발췌검사 관리방법>이 2019년 7월 30일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 2019년 제11차 국무(局務)회의에서 심의를 통과하여 공포하는 바이며 2019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국장 샤오야칭(肖亞慶)  2019년 8월 8일  **제1장 총칙**   1. 식품안전 발췌검사 업무를 규율하고 식품안전 감독관리를 강화하며 대중의 신체건강과 생명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목적으로 <중화인민공화국 식품안전법> 등 법률•법규에 근거하여 이 방법을 제정한다. 2. 시장감독관리부서가 실시하는 식품안전 감독 발췌검사와 리스크 모니터링 발췌검사는 이 방법을 적용받는다. 3.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은 전국적 식품안전 발췌검사 업무를 조직하고 전개하며 지방 시장감독관리부서가 조직하고 실시하는 식품안전 발췌검사 업무를 지도한다.   현(縣)급 이상 지방 시장감독관리부서는 본급 식품안전 발췌검사 업무를 조직하고 전개하며 규정에 따라 상급 시장감독관리부서가 조직하는 식품안전 발췌검사 업무를 실시한다.   1. 시장감독관리부서는 과학성•공개성•공평성•공정성의 원칙에 따라 식품안전 문제점의 발견 및 조사처리를 위주로 법에 의거하여 식품 생산•경영 활동의 전체 과정에 대한 식품안전 발췌검사 업무를 조직하고 전개한다.   식품생산경영자는 식품안전의 제1책임자로서 법에 따라 시장감독관리부서가 조직하고 실시하는 식품안전 발췌검사 업무에 협조하여야 한다.   1. 시장감독관리부서는 식품안전 발췌검사의 견본 추출 및 검사 업무를 수행하는 기술기관(이하 ‘검사수행기관’으로 약칭)과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양 당사자의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약정하여야 한다.   검사수행기관은 관련 법률•법규의 규정에 따라 자격을 취득한 경우에야 검사 활동에 종사할 수 있다. 검사수행기관은 검사를 실시함에 있어 과학을 존중하고 직업도덕을 엄격히 준수함으로써 그가 발행하는 검사 데이터와 결론의 객관성•공정성을 보장하여야 하며 조작된 검사보고서를 발행하여서는 아니된다.  시장감독관리부서는 검사수행기관의 발췌검사 업무에 대하여 감독 검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검사 수행 능력의 결함 또는 중대한 검사 품질 문제 등이 발견된 경우 유관 규정에 따라 지체없이 처리하여야 한다.   1.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은 국가 식품안전 발췌검사 정보 시스템을 구축하여 식품안전 발췌검사 데이터를 정기적으로 분석하고 식품안전 리시크 경보를 강화하며 관련 감독관리 제도를 보완하고 실행을 독촉한다.   현(縣)급 이상 지방 시장감독관리부서는 규정에 따라 국가 식품안전 발췌검사 정보 시스템을 통하여 식품안전 발췌검사 데이터를 제출하고 취합 및 분석을 실시하여야 한다.   1.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의 책임과 조직하에 식품안전 발췌검사 지도규범을 제정한다.   식품안전 발췌검사 업무를 전개함에 있어 식품안전 발췌검사 지도규범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2장 계획**   1.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은 식품안전 감독관리 업무의 수요에 근거하여 전국 식품안전 발췌검사 연간계획을 제정한다.   현(縣)급 이상 지방 시장감독관리부서는 상급 시장감독관리부서가 제정한 발췌검사 연간계획에 근거하여 실제 상황과 결부시켜 해당 행정구역의 식품안전 발췌검사 업무방안을 제정하여야 한다.  시장감독관리부서는 업무 수요에 따라 비정기적으로 식품안전 발췌검사를 전개할 수 있다.   1. 식품안전 발췌검사 업무계획 및 업무방안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2. 발췌검사를 실시하는 식품의 종류 3. 견본 추출 단계, 견본 추출 방법, 견본 추출 수량 등 견본 추출 업무 요구사항 4. 검사항목, 검사방법, 판정근거 등 검사 업무 요구사항 5. 발췌검사 결과 및 취합분석 보고서의 제출방식과 제출기한 6. 법률•법규•규장 및 식품안전표준에 규정된 기타 내용 7. 식품안전 발췌검사 업무계획 작성 시 다음 각 호의 식품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 8. 리스크가 높고 오염 수준이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식품 9. 유통 범위가 넓고 소비량이 크며 소비자의 불만신고•제보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 식품 10. 리스크 모니터링, 감독 검사, 특별 단속, 사건 계사(稽査), 사고 조사, 응급처리 등 업무에서 잠재적 리스크가 상대적으로 큰 것으로 나타난 식품 11. 영유아 및 기타 특정 대상 전용 주식•보조식품 12. 학교 및 영유아 보육시설의 식당, 관광명소의 요식업소, 중앙 집중식 조리센터, 단체급식업체가 경영하는 식품 13. 불법으로 비(非)식용성 물질이 첨가되었을 가능성이 있는 식품으로 유관부서가 공개한 식품 14. 해외에서 이미 건강피해 사례가 발생한 식품으로 국내에서도 피해 발생 가능성을 증명하는 증거가 있는 식품 15. 발췌검사 업무의 중점으로 삼아야 하는 기타 식품   **제3장 견본 추**출   1. 시장감독관리부서는 견본 추출을 스스로 진행하거나 검사수행기관에 위탁할 수도 있다. 식품안전 발췌검사용 견본 추출 업무는 견본 추출 대상 및 견본추출인원 무작위 선정의 요구를 준수하여야 한다.   현(縣)급 이상 지방 시장감독관리부서는 상급 시장감독관리부서의 요구에 따라 식품안전 발췌검사용 견본 추출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1. 식품안전 발췌검사를 실시하는 경우 견본 비용을 지급하여야 한다. 2. 견본추출기관은 식품 견본 추출 관리제도를 수립하여 해당 직위의 직책, 견본 추출 절차 및 업무상 준수사항을 명확히 하고 견본추출인원에 대한 교육 및 지도를 강화함으로써 견본 추출 업무의 질을 보장하여야 한다.   견본추출인원은 식품안전에 관한 법률•법규•규장과 식품안전표준 등의 관련 규정을 숙지하여야 한다.   1. 현장에서 이뤄지는 견본 추출 임무는 최소한 2명의 견본추출인원이 같이 수행하여야 하며 견본 추출 대상 식품생산경영자에게 발췌검사 실시 고지서와 유효한 신분증명을 제시하여야 한다. 검사수행기관이 견본 추출 임무를 수행하는 경우 업무위임장을 추가로 제시하여야 한다.   사건 계사(稽査), 사고 조사 과정에서의 식품안전 발췌검사 활동은 식품안전 행정법 집행인원이 직접적으로 진행하거나 식품안전 행정법 집행인원의 동행하에 이뤄져야 한다.  식품안전 발췌검사 임무를 수행하는 견본추출기관과 관련 인원은 사전에 견본 추출 대상 식품생산경영자에게 통보하여서는 아니된다.   1. 견본추출인원은 현장에서 견본 추출 시 견본 추출 대상 식품생산경영자의 영업집조, 허가증 등 추적이 가능한 정보를 기록하여야 한다.   견본추출인원은 식품경영자의 경영장소•창고와 식품생산자의 완제품 창고에서 판매 대기 중인 제품 중에서 무작위로 견본을 추출하여야 하며 식품생산경영자가 스스로 견본을 제공하도록 하여서는 아니된다.  견본 추출 수량은 검사와 재검사의 요구를 만족시키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1. 리스크 모니터링, 사건 계사(稽査), 사고 조사, 응급처리 과정에서의 견본 추출은 추출 수량, 추출 장소, 추출 기관의 합법적 자격 보유 여부 등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2. 식품안전 감독 발췌검사의 견본은 검사용 견본과 재검사 대비용 견본으로 구분한다.   현장에서 견본을 추출하는 경우 견본추출인원은 효율적인 봉인 개봉 방지 조치를 취하여 검사용 견본과 재검사 대비용 견본을 각각 봉인한 후 견본추출인원과 견본 추출 대상 식품생산경영자가 서명 또는 날인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견본추출인원은 구매 영수증을 보관하여여 하며 사진 촬영 또는 동영상 촬영 등 방식으로 견본 추출 장소, 저장•보관 환경, 견본 정보 등에 관한 증거를 남겨야 한다.   1. 시장감독관리부서는 온라인 식품안전 발췌검사를 전개함에 있어 견본 구매자 및 구매대금 지급계정, 등록계정, 배송주소, 연락방식 등 정보를 기록하여야 한다. 견본 구매자는 화면 캡쳐, 사진 촬영 또는 동영상 촬영 등 방식으로 견본 추출 대상 온라인 식품생산경영자의 정보, 견본 상세페이지에 전시된 정보, 주문서 정보, 구매대금 결제 기록 등을 기록하여야 한다.   견본추출인원은 견본을 배송받은 후 사진 촬영 또는 동영상 촬영 등 방식으로 포장 개봉 과정을 기록하여야 하며 배송 포장, 견본 보장, 견본 저장•운송 조건 등을 검사하고 검사용 견본과 재검사 대비용 견본을 각각 별도로 봉인처리하여야 한다.   1. 견본추출인원은 규범적인 견본 추출 문서를 사용하여 견본 추출 정보를 상세하게 기록하여야 한다. 기록은 최소 2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현장에서 견본 추출 시 견본추출인원은 견본 추출 대상 식품생산경영자에게 법에 의거하여 갖는 권리와 부담하는 의무를 고지하여야 한다. 견본 추출 대상 식품생산경영자는 식품안전 발췌검사용 견본 추출 문서에 서명하거나 날인하여야 하며 식품안전 발췌검사용 견본 추출 업무를 거부하거나 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   1. 현장에서 견본 추출 시 견본, 견본 발췌 문서 및 관련 자료는 견본추출인원이 5일(근무일 기준) 내에 본인이 직접 전달하거나 탁송하는 방식으로 검사수행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견본 추출 대상 식품생산경영자가 스스로 견본을 제출하고 문서를 탁송하여서는 아니된다. 객관적인 사유로 견본 제출 기한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 발췌검사를 조직한 시장감독관리부서의 사전 동의를 득하여야 한다.   저장 및 운송상 특수 요구가 있는 견본의 경우 견본추출인원은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여 견본 저장•운송 과정이 국가의 관련 규정과 포장에 표시된 요구에 부합됨으로써 검사 결론에 영향을 미치는 변화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장하여야 한다.   1. 견본추출인원은 식품생산경영자의 법 위반 혐의, 식품생산경영자의 식품•원료의 출처가 불법적인 사실을 발견하였거나 식품생산경영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식품안전 발췌검사용 견본 추출을 거부하는 경우 관할권이 있는 시장감독관리부서에 보고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제4장 검사 및 결과의 보고•제출**   1. 식품안전 발췌검사용 견본은 검사수행기관이 보관한다.   검사수행기관은 견본 접수 시 견본의 외관, 상태, 봉인지 파손 여부 및 검사결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기타 상황 존재 여부를 검사하고 기록하여야 하며 견본과 견본 추출 문서상의 정보를 대조확인하여야 한다. 검사용 견본과 재검사 대비용 견본은 각각 표시를 부착한 후 요구에 따라 보관실에 보관하여야 한다.  견본 추출이 규범적으로 이뤄지지 아니한 견본에 대해 검사수행기관은 접수를 거부하고 서면으로 그 이유를 설명하여야 하며 지체없이 해당 식품안전 발췌검사를 조직 또는 실시하는 시장감독관리부서에 고보하여야 한다.   1. 식품안전 감독 발췌검사는 식품안전표준에 정해진 검사항목 및 검사방법을 채택하여야 한다. 식품안전표준이 없을 경우 법률•법규에 따라 제정한 임시 한정값, 임시 검사방법 또는 보충 검사방법을 채택하여야 한다.   리스크 모니터링, 사건 계사(稽奢), 사고 조사, 응급처리 등 과정에서 전항에 규정한 검사방법이 없을 경우 기타 검사방법을 채택하여 식품안전 문제의 원인을 분석할 수 있다. 검사방법을 채택함에 있어 기술수단의 선진성 원칙에 따라야 하며 국가 또는 성(省)급 시장감독관리부서의 동의를 득하여야 한다.   1. 식품안전 발췌검사는 검사수행기관 및 검사수행인원 책임제를 시행한다. 검사수행기관이 발행한 식품안전검사보고서에는 기관의 공인을 날인하고 검사수행인원이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검사수행기관 및 검사수행인원은 그가 발행한 식품안전검사보고서에 대한 책임을 부담한다.   검사수행기관은 견본 접수일로부터 20일(근무일 기준) 내에 검사보고서를 발행하여야 한다. 시장감독관리부서와 검사수행기관 사이에 별도의 약정이 있을 경우 그 약정에 따른다.  발췌검사 임무를 조직•실시하는 시장감독관리부서의 동의 없이 검사수행기관은 검사 임무의 일부 또는 전체를 제3자에게 의뢰하여서는 아니된다.   1. 식품안전 감독 발췌검사에서 합격 결론이 내려진 경우 검사수행기관은 검사결론을 내린 날로부터 3개월 동안 재검사 대비용 견본을 적절하게 보관하고 있어야 한다. 재검사 대비용 견본의 남은 품질보증기간이 3개월 미만일 경우 품질보증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보관하고 있어야 한다.   불합격 결론이 내려진 경우 검사수행기관은 검사결론을 내린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재검사 대비용 견본을 보관하고 있어야 한다. 재검사 대비용 견본의 남은 품질보증기간이 6개월 미만일 경우 품질보증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보관하고 있어야 한다.   1. 식품안전 감독 발췌검사에서 합격 결론이 내려진 경우 검사수행기관은 검사결론을 내린 날로부터 7일(근무일 기준) 내에 검사결론을 해당 발췌검사를 조직하였거나 검사 용역을 의뢰한 시장감독관리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불합격 결론이 내려진 경우 검사수행기관은 검사결론을 내린 날로부터 2일(근무일 기준) 내에 해당 발췌검사를 조직하였거나 검사 용역을 의뢰한 시장감독관리부서에 보고하여야 한다.   1.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이 조직하는 식품안전 감독 발췌검사에서 불합격 결론이 내려진 경우 검사수행기관은 관련 요구에 따른 보고와 더불어 식품안전 발췌검사 정보 시스템을 통하여 견본 추출지와 상품에 표시된 식품생산자 주소지의 시장감독관리부서에 지체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지방 시장감독관리부서가 조직하거나 실시하는 식품안전 감독 발췌검사에서 불합격 결론이 내려졌고 견본 추출지와 상품에 표시된 식품생산자 주소지의 성(省)급 행정구역이 상이한 경우 견본추출지 시장감독관리부서는 불합격 검사결론을 통보받은 후 식품안전 발췌검사 정보 시스템을 통하여 상품에 표시된 식품생산자 주소지의 동급 시장감독관리부서에 지체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동일 성(省)급 행정구역 내에서의 불합격 검사결론 통보는 견본추출지 성(省)급 시장감독관리부서가 규정한 절차와 기한에 따른다.  온라인 식품거래 제3자 플랫폼을 통해 견본을 추출한 경우 위 두항의 규정에 따른 통보와 더불어 온라인 식품거래 제3자 플랫폼 제공자 주소지의 시장감독관리부서에도 통보하여야 한다.   1. 식품안전 감독 발췌검사 결론에서 불합격 식품이 신체건강 및 생명안전에 심각한 피해를 초래할 가능성이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난 경우 시장감독과리부서와 검사수행기관은 규정에 따라 즉시 보고하거나 통보하여야 한다.   사건 계사(稽査), 사고 조사, 응급처리 과정에서의 검사결론 통보와 보고는 이 방법에 규정한 기한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1. 현(縣)급 이상 지방 시장감독관리부서는 식품안전 감독 발췌검사 불합격 결론을 통보받은 후 성(省)급 이상 시장감독관리부서의 규정에 따라 5일(근무일 기준) 내에 검사보고서와 발췌검사 결과 통보서를 견본 추출 대상 식품생산경영자, 식품집중거래시장 운영자, 온라인 식품거래 제3자 플랫폼 제공자에게 송달하여야 하며 법에 의거하여 향유하는 권리와 부담하는 의무를 고지하여야 한다.   **제5장 재검사 및 이의 처리**   1. 이 방법의 규정에 따라 실시한 감독 발췌검사의 결론에 대해 이의가 있는 식품생산경영자는 검사결론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7일(근무일 기준) 내에 감독 발췌검사를 실시한 시장감독관리부서 또는 그 직상급 시장감독관리부서에 서면으로 재검사를 신청할 수 있다.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에 재검사를 신청하는 경우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은 재검사 신청인 소재지의 성(省)급 시장감독관리부서에 처리를 위탁할 수 있다. 기한이 경과된 후에 재검사를 신청하는 경우 접수하지 아니한다. 2.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재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한다. 3. 미생물 지표 불합격으로 검사결론이 내려진 경우 4. 재검사 대비용 견본의 품질보증기간이 경과된 경우 5. 기한 경과 후 재검사를 신청하는 경우 6. 기타 사유로 인해 재검사 대비용 견본으로 재검사 목적을 실현할 수 없게 된 경우 7. 법률•법규•규장 및 식품안전표준에 재검사를 실시하지 않는 것으로 규정한 기타의 경우 8. 시장감독관리부서는 재검사 신청서류를 제출받은 날로부터 5일(근무일 기준) 내에 접수 또는 불접수 통보서를 발행하여야 한다. 불접수하는 경우 서면으로 그 이유를 설명하여야 한다.   시장감독관리부서는 접수 통보서를 발행한 날로부터 5일(근무일 기준) 내에 재검사수행기관 명록 중에서 신속성•편리성•고효율성의 원칙에 따라 무작위로 재검사수행기관을 확정하여 재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재검사수행기관이 1차 검사 수행기관과 동일한 기관이어서는 아니된다. 객관적인 사유로 인하여 적시에 재검사수행기관을 확정할 수 없게 된 경우 5일(근무일 기준)간 연장이 가능하며 연장하는 경우 신청인에게 그 이유를 설명하여야 한다.  재검사수행기관은 정당한 사유 없이 재검사 임무를 거부하여서는 아니된다. 재검사 임무를 수행하는 것이 확실히 불가능한 경우 2일(근무일 기준) 내에 관련 시장감독관리부서에 서면으로 설명하여야 한다.  재검사수행기관은 재검사 신청인과 일상적 검사 용역 의뢰 등 이해관계가 있을 경우 재검사 신청을 접수하여서는 아니된다.   1. 1차 검사 수행기관은 재검사수행기관이 확정된 후 3일(근무일 기준) 내에 재검사 대비용 견본을 재검사수행기관에 인계하여야 한다. 객관적인 사유로 제때에 인계가 불가능한 경우 재검사 신청을 접수한 시장감독관리부서의 동의를 득한 후 3일(근무일 기준)간 연장할 수 있다. 재검사 대비용 견본의 배송 방식은 1차 검사 수행기관이 신청인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재검사수행기관은 재검사 대비용 견본을 전달받은 후 사진 촬영 또는 동영상 촬영 등 방식으로 재검사 대비용 견본의 외포장, 봉인지 등의 온전성을 확인하고 견본 접수 기록을 정확하게 작성하여야 한다. 재검사 대비용 견본의 봉인지, 포장이 파손되었거나 결과의 판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기타 상황이 존재하는 경우 재검사수행기관은 지체없이 시장감독관리부서에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1. 재검사수행기관은 재검사를 실시함에 있어 1차 검사 수행기관과 동일한 검사방법을 채택하여야 한다. 재검사를 실시하는 시점에 식품안전표준상 검사방법에 대한 신규 규정이 있을 경우 그 규정에 따른다.   1차 검사 수행기관은 요원을 파견하여 재검사수행기관의 재검사 실시 과정을 관찰할 수 있으며 재검사수행기관은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1차 검사 수행기관은 재검사 업무를 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   1. 재검사수행기관은 재검사 대비용 견본을 전달받은 날로부터 10일(근무일 기준) 내에 재검사 결론을 시장감독관리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시장감독관리부서와 재검사수행기관 사이에 별도의 약정이 있을 경우 그 약정에 따른다. 재검사수행기관이 발행한 재검사 결론은 최종 검사결론이다.   시장감독관리부서는 재검사 결론을 제출받은 날로부터 5일(근무일 기준) 내에 재검사 결론을 신청인에게 통보하고 불합격 식품 생산경영자 소재지의 시장감독관리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1. 재검사 신청인은 재검사수행기관에 재검사 비용을 선지급하여야 한다. 재검사 결론이 1차 검사의 결론과 일치한 경우 재검사 비용은 재검사 신청인이 부담한다. 재검사 결론과 1차 검사의 결론이 일치하지 아니한 경우 재검사 비용은 감독 발췌검사를 실시한 시장감독관리부서가 부담한다.   재검사 비용에는 검사 비용과 견본 배송으로 인해 발생한 관련 비용이 포함된다.   1. 식품안전 감독 발췌검사 과정에서 식품생산경영자는 그가 생산•경영하는 식품의 견본 추출 과정, 견본의 진실성, 검사방법, 표준 적용 등 사항에 대해 법에 의거하여 이의 처리 신청을 제기할 수 있다.   견본 추출 과정에 대해 이의가 있는 신청인은 견본 추출 완료 후 7일(근무일 기준) 내에 감독 발췌검사를 실시하는 시장감독관리부서에 서면으로 신청을 제기하여야 하며 관련 증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견본의 진실성, 검사방법, 표준 적용 등 사항에 대해 이의가 있는 신청인은 불합격 결론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7일(근무일 기준) 내에 감독 발췌검사를 조직하고 실시하는 시장감독관리부서에 서면으로 신청을 제기하여야 하며 관련 증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에 이의 처리 신청을 제기하는 경우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은 신청인 주소지의 성(省)급 시장감독관리부서에 처리를 위탁할 수 있다.   1. 이의 처리 신청 자료가 요구에 부합하지 아니하거나 증명자료가 완비되지 못하였을 경우 시장감독관리부서는 현장 즉석에서 또는 5일(근무일 기준) 내에 보정이 필요한 모든 내용을 신청인에게 일괄적으로 고지하여야 한다.   시장감독관리부서는 신청자료를 제출받은 날로부터 5일(근무일 기준) 내에 접수 또는 불접수 통보서를 발행하여야 한다. 불접수하는 경우 서면으로 그 이유를 설명하여야 한다.   1. 이의를 심사함에 있어 기타 시장감독관리부서의 협조를 필요로 하는 경우 관련 시장감독관리부서는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견본 추출 과정에 대한 이의에 대해 시장감독관리부서는 접수일로부터 20일(근무일 기준) 내에 이의 심사를 완료하고 심사 결론을 서면으로 신청인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견본의 진실성, 검사방법, 표준 적용 등 사항에 대한 이의에 대해 시장감독관리부서는 접수일로부터 30일(근무일 기준) 내에 심사를 완료하고 심사 결론을 서면으로 신청인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유관부서와의 협의를 통해 검사 및 판정 근거와 관련된 요구사항을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경우 이에 소요되는 시간은 해당 기간에 산입되지 아니한다.  시장감독관리부서는 이의 심사의 실제 상황에 근거하여 법에 따라 처리하여야 하며 적시에 이의 처리 신청 접수 상황 및 심사 결론을 불합격 식품 생산경영자 주소지의 시장감독관리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6장 확인조사•처리 및 정보 발표**   1. 식품생산경영자는 감독 발췌검사 불합격 결론을 통보받은 즉시 불합격 식품에 대해 봉인 조치를 취하고 불합격 식품의 생산•경영을 일시적으로 중단하여야 하며 관련 생산경영자와 소비자에게 통보하고 시중에서 판매되고 있는 불합격 식품을 리콜하는 등 리스크 통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아울러, 불합격 원인을 점검하고 시정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지체없이 주소지의 시장감독관리부서에 처리 상황을 보고하여야 한다. 또한, 시장감독관리부서의 조사처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하며 조사처리를 거부하거나 회피하여서는 아니된다.   재검사 및 이의 처리 기간에 식품생산경영자는 전항에 규정한 의무의 이행을 중단하여서는 아니된다. 식품생산경영자가 주동적으로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시장감독관리부서는 그에게 이행 명령을 내려야 한다.  국가이익, 공공이익의 수요가 있거나 중대 식품안전 돌발사건을 처리하는데 필요한 경우 성(省)급 이상 시장감독관리부서의 동의를 득한 후 성(省)급 이상 시장감독관리부서가 조사분석을 조직하거나 발췌검사를 다시 실시하여 불합격 원인을 규명할 수 있다.   1. 식품안전 리스크 모니터링 결과에서 잠재적인 식품안전 리스크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난 경우 성(省)급 이상 시장감독관리부서는 관련 분야의 전문가들을 조직하여 진일보로 조사•분석•연구를 실시하고 판단을 내려야 한다. 관련 식품생산경영자에게 통보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지체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통보를 받은 식품생산경영자는 즉시 자가진단을 실시하여야 하며 식품이 식품안전표준에 도달하지 못하였거나 신체건강에 피해를 초래할 가능성을 증명하는 증거가 발견되었을 경우 식품안전법 제63조의 규정에 따라 생산•경영을 중단하고 식품 리콜을 실시하여야 하며 관련 상황을 보고하여야 한다.  식품생산경영자가 주동적으로 전항에 규정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시장감독관리부서는 그에게 이행 명령을 내려야 하며 식품생산경영자의 법정대표인 또는 주요 책임자를 소환해 책임에 관한 면담(責任約談)을 진행할 수 있다.   1. 식품생산경영자는 감독 발췌검사 불합격 결론을 통보받은 후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의 규정에 따라 견본을 추출한 경영장소의 현저한 위치에 관련 불합격 제품의 정보를 공시하여야 한다. 2. 시장감독관리부서는 감독 발췌검사 불합격 결론을 통보받은 후 지체없이 확인조사•처리 업무를 개시하여 식품생산경영자가 법정(法定) 의무를 이행하도록 독촉하고 법에 의거하여 조사•처리를 전개하여야 한다. 필요에 따라 상급 시장감독관리부서가 직접적으로 조사•처리를 조직할 수도 있다.   현(縣)급 이상 지방 시장감독관리부서가 조직한 감독 발췌검사의 검사결론에서 불합격 식품이 불법적으로 첨가한 비식용물질을 포함하고 있다거나 병원성 미생물, 농약 잔류물, 수의약(獸葯) 잔류물, 생물 독소, 중금속 및 신체건강에 피해를 초래할 수 있는 기타 물질이 허용기준치를 심각하게 초과한 것으로 나타난 경우 법에 의거하여 지체없이 처리하여야 하며 상급 시장감독관리부서를 거쳐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에 보고하여야 한다.   1. 조사에서 기타 부서의 직책과 연관성이 있는 상황이 발견된 경우 관련 정보를 해당 직능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위탁생산과 연관되었을 경우 수주측 식품생산자 소재지의 시장감독관리부서는 확인조사•처리를 전개함과 동시에 의뢰측 식품생산경영자 소재지의 시장감독관리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2. 시장감독관리부서는 90일 내에 불합격 식품 확인조사•처리 업무를 완료하여야 한다. 기한 연장이 필요한 경우 확인조사•처리를 담당하는 시장감독관리부서 책임자에게 서면으로 보고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시장감독관리부서는 정부 웹사이트 등 매체를 통하여 감독 발췌검사 결과와 불합격 식품 확인조사•처리 관련 정보를 지체없이 사회에 공개하여야 하며 요구에 따라 관련 정보를 식품생산경영자의 신용기록에 기재하여야 한다. 시장감독관리부서가 공포하는 식품안전 감독 발췌검사 불합격 정보에는 발췌검사 대상 식품의 명칭, 규격, 상표, 생산일자 또는 제조번호, 불합격 항목, 상품에 표시된 생산자의 명칭•주소지 및 견본 추출 대상 업체의 명칭•주소지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공공이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식품안전 감독 발췌검사 정보의 경우 시장감독관리부서는 정보 공개 전의 분석•연구•판단을 강화함으로써 과학적이고 정확하게 정보를 공개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관련 부서에 통보하고 동급 인민정부 또는 상급 시장감독관리부서에 보고하여야 한다.  그 어떠한 조직과 개인도 시장감독관리부서가 조직하는 식품안전 감독 발췌검사의 정보를 사사로이 발표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7장 벌률책임**   1. 식품생산경영자가 이 방법의 규정을 어기고 정당한 사유 없이 식품안전 발췌검사, 리스크 모니터링 및 조사처리를 거부•방해하거나 간섭하는 경우 현(縣)급 이상 인민정부의 시장감독관리부서가 식품안전법 제133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치안관리처벌법상 유관 규정의 위반에 해당되는 경우 시장감독과리부서가 법에 따라 공안기관으로 이송하여 처리한다.   식품생산경영자가 이 방법 제37조의 규정을 어기고 조작된 증명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시장감독관리부서가 경고를 주고 1만위안 이상 3만위안 이하의 과징금을 병과한다.  식품경영자가 이 방법 제42조의 규정을 어기고 해당 불합격 제품의 정보를 공시하지 아니하는 경우 시장감독관리부서가 시정을 명한다. 시정을 거부하는 경우 경고를 주고 2,000위안 이상 3만위안 이하의 과징금을 병과한다.   1. 이 방법 제40조, 제41조의 규정을 위반함으로써 시장감독관리부서의 이행 명령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식품생산경영자가 리콜 또는 경영 중단을 거부하는 경우 현(縣)급 이상 인민정부의 시장감독관리부서가 식품안전법 제12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2. 시장감독관리부서는 법에 따라 식품생산경영자의 행정처벌 등 정보를 국가 기업신용정보 공시 시스템으로 취합하여 식품생산경영자의 기록에 기재하고 사회에 공시하여야 한다. 중대한 불법•불성실 행위를 행한 경우 규정에 따라 연합징계를 실시한다. 3.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시장감독관리부서는 유관 규정에 따라 법에 의거하여 처리하고 사회에 공개하여야 한다. 범죄에 해당하는 경우 법에 의거하여 사법기관으로 이송하여 처리한다. 4. 견본을 바꿔치기 하거나 검사 데이터를 위조하거나 조작된 검사보고서를 발행하는 경우 5. 발췌검사 업무상 유리한 점을 이용하여 부정당 이익을 취하는 경우 6. 규정을 어기고 사전에 견본 추출 대상 식품생산경영자에게 통보하는 경우 7. 식품안전 발췌검사 정보를 사사로이 발표하는 경우 8. 정해진 기한 및 절차에 따라 불합격 검사결론을 보고하지 아니함으로써 심각한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 9. 기타 불법행위를 행하는 경우   전항 제(1)호에 해당하는 상황이 있을 경우 시장감독관리부서는 종신적으로 그에게 발췌검사 임무를 의뢰하여서는 아니된다. 전항 제(1)호를 제외한 기타 상황이 있을 경우 시장감독관리부서는 5년 동안 그에게 발췌검사 엄무를 의뢰하여서는 아니된다.  재검사수행기관이 전항의 행위를 행하였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재검사 임무의 수행을 거부하는 경우 현(縣)급 이상 인민정부의 시장감독관리부서가 경고를 준다.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내에 재검사 업무의 수행을 거부한 횟수가 2회에 도달하는 경우 국무원 시장감독관리부서가 유관부서와 협의하여 그의 재검사수행기관 자격을 취소하고 사회에 공포한다.   1. 시장감독관리부서와 그의 업무인원이 법률•법규 및 이 방법의 규정과 유관 기율 요구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식품안전법 및 관련 규정에 의거하여 해당 업무를 직접적으로 담당하는 주관자와 기타 직접적 책임이 있는 자에게 상응하는 처분을 내려야 한다. 범죄에 해당하는 경우 사법기관으로 이송하여 처리한다.   **제8장 부칙**   1. 이 방법에서 감독 발췌검사라 함은 시장감독관리부서가 법에 정해진 절차와 식품안전표준 등의 규정에 따라 리스크 점검을 목적으로 조직하는 식품 견본 추출, 검사, 재검사, 처리 등 활동을 지칭한다.   이 방법에서 리스크 모니터링이라 함은 시장감독관리부서가 식품안전표준이 없는 리스크 요인을 관리하기 위한 목적으로 전개하는 모니터링, 분석, 처리 등 활동을 지칭한다.   1. 시장감독관리부서는 이 방법의 관련 규정을 참조하여 평가성 발췌검사를 조직하고 전개할 수 있다.   평가성 발췌검사라 함은 법에 정해진 절차와 식품안전표준 등 규정에 따라 발췌검사를 전개함으로써 시중에서 유통되는 식품의 전반적인 안전 상황을 평가하는 활동을 지칭한다.   1. 식품첨가제 검사는 이 방법의 식품 검사 관련 규정을 적용받는다.   식품 생산•경영 단계로 유입되는 요식업 식품, 식용 농산물의 발췌검사와 품질보증기간이 짧은 식품, 계절성 식품의 발췌검사는 이 방법을 참조하여 집행한다.  시장감독관리부서는 이 방법상 온라인 식품안전 감독 발췌검사의 규정을 참조하여 자동판매기, 무인 슈퍼마켓 등 현장에 경영인원이 없는 식품경영자에 대한 발췌검사를 조직하고 실시할 수 있다.   1. 검사수행기관이 제작한 전자문서 형태의 검사보고서는 그가 서면으로 발행한 검사보고서와 동등한 법률효력을 갖는다. 2. 이 방법은 2019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  | **食品安全抽样检验管理办法**  国家市场监督管理总局令第15号     《食品安全抽样检验管理办法》已于2019年7月30日经国家市场监督管理总局2019年第11次局务会议审议通过，现予公布，自2019年10月1日起施行。                  局长 肖亚庆2019年8月8日    **第一章 总 则**  **第一条**为规范食品安全抽样检验工作，加强食品安全监督管理，保障公众身体健康和生命安全，根据《中华人民共和国食品安全法》等法律法规，制定本办法。  **第二条** 市场监督管理部门组织实施的食品安全监督抽检和风险监测的抽样检验工作，适用本办法。  **第三条** 国家市场监督管理总局负责组织开展全国性食品安全抽样检验工作，监督指导地方市场监督管理部门组织实施食品安全抽样检验工作。  　　县级以上地方市场监督管理部门负责组织开展本级食品安全抽样检验工作，并按照规定实施上级市场监督管理部门组织的食品安全抽样检验工作。  **第四条** 市场监督管理部门应当按照科学、公开、公平、公正的原则，以发现和查处食品安全问题为导向，依法对食品生产经营活动全过程组织开展食品安全抽样检验工作。  　　食品生产经营者是食品安全第一责任人，应当依法配合市场监督管理部门组织实施的食品安全抽样检验工作。  **第五条** 市场监督管理部门应当与承担食品安全抽样、检验任务的技术机构（以下简称承检机构）签订委托协议，明确双方权利和义务。  　　承检机构应当依照有关法律、法规规定取得资质认定后方可从事检验活动。承检机构进行检验，应当尊重科学，恪守职业道德，保证出具的检验数据和结论客观、公正，不得出具虚假检验报告。  　　市场监督管理部门应当对承检机构的抽样检验工作进行监督检查，发现存在检验能力缺陷或者有重大检验质量问题等情形的，应当按照有关规定及时处理。  **第六条** 国家市场监督管理总局建立国家食品安全抽样检验信息系统，定期分析食品安全抽样检验数据，加强食品安全风险预警，完善并督促落实相关监督管理制度。  　　县级以上地方市场监督管理部门应当按照规定通过国家食品安全抽样检验信息系统，及时报送并汇总分析食品安全抽样检验数据。  **第七条** 国家市场监督管理总局负责组织制定食品安全抽样检验指导规范。  　　开展食品安全抽样检验工作应当遵守食品安全抽样检验指导规范。    **第二章 计 划**  **第八条** 国家市场监督管理总局根据食品安全监管工作的需要，制定全国性食品安全抽样检验年度计划。  　　县级以上地方市场监督管理部门应当根据上级市场监督管理部门制定的抽样检验年度计划并结合实际情况，制定本行政区域的食品安全抽样检验工作方案。  　　市场监督管理部门可以根据工作需要不定期开展食品安全抽样检验工作。  **第九条** 食品安全抽样检验工作计划和工作方案应当包括下列内容：  　　（一）抽样检验的食品品种；  　　（二）抽样环节、抽样方法、抽样数量等抽样工作要求；  　　（三）检验项目、检验方法、判定依据等检验工作要求；  　　（四）抽检结果及汇总分析的报送方式和时限；  　　（五）法律、法规、规章和食品安全标准规定的其他内容。  **第十条** 下列食品应当作为食品安全抽样检验工作计划的重点：  　　（一）风险程度高以及污染水平呈上升趋势的食品；  　　（二）流通范围广、消费量大、消费者投诉举报多的食品；  　　（三）风险监测、监督检查、专项整治、案件稽查、事故调查、应急处置等工作表明存在较大隐患的食品；  　　（四）专供婴幼儿和其他特定人群的主辅食品；  　　（五）学校和托幼机构食堂以及旅游景区餐饮服务单位、中央厨房、集体用餐配送单位经营的食品；  　　（六）有关部门公布的可能违法添加非食用物质的食品；  　　（七）已在境外造成健康危害并有证据表明可能在国内产生危害的食品；  　　（八）其他应当作为抽样检验工作重点的食品。    **第三章 抽 样**  **第十一条** 市场监督管理部门可以自行抽样或者委托承检机构抽样。食品安全抽样工作应当遵守随机选取抽样对象、随机确定抽样人员的要求。  　　县级以上地方市场监督管理部门应当按照上级市场监督管理部门的要求，配合做好食品安全抽样工作。  **第十二条** 食品安全抽样检验应当支付样品费用。  **第十三条** 抽样单位应当建立食品抽样管理制度，明确岗位职责、抽样流程和工作纪律，加强对抽样人员的培训和指导，保证抽样工作质量。  　　抽样人员应当熟悉食品安全法律、法规、规章和食品安全标准等的相关规定。  **第十四条** 抽样人员执行现场抽样任务时不得少于2人，并向被抽样食品生产经营者出示抽样检验告知书及有效身份证明文件。由承检机构执行抽样任务的，还应当出示任务委托书。  　　案件稽查、事故调查中的食品安全抽样活动，应当由食品安全行政执法人员进行或者陪同。  　　承担食品安全抽样检验任务的抽样单位和相关人员不得提前通知被抽样食品生产经营者。  **第十五条** 抽样人员现场抽样时，应当记录被抽样食品生产经营者的营业执照、许可证等可追溯信息。  　　抽样人员可以从食品经营者的经营场所、仓库以及食品生产者的成品库待销产品中随机抽取样品，不得由食品生产经营者自行提供样品。  　　抽样数量原则上应当满足检验和复检的要求。  **第十六条** 风险监测、案件稽查、事故调查、应急处置中的抽样，不受抽样数量、抽样地点、被抽样单位是否具备合法资质等限制。  **第十七条** 食品安全监督抽检中的样品分为检验样品和复检备份样品。  　　现场抽样的，抽样人员应当采取有效的防拆封措施，对检验样品和复检备份样品分别封样，并由抽样人员和被抽样食品生产经营者签字或者盖章确认。  　　抽样人员应当保存购物票据，并对抽样场所、贮存环境、样品信息等通过拍照或者录像等方式留存证据。  **第十八条** 市场监督管理部门开展网络食品安全抽样检验时，应当记录买样人员以及付款账户、注册账号、收货地址、联系方式等信息。买样人员应当通过截图、拍照或者录像等方式记录被抽样网络食品生产经营者信息、样品网页展示信息，以及订单信息、支付记录等。  　　抽样人员收到样品后，应当通过拍照或者录像等方式记录拆封过程，对递送包装、样品包装、样品储运条件等进行查验，并对检验样品和复检备份样品分别封样。  **第十九条** 抽样人员应当使用规范的抽样文书，详细记录抽样信息。记录保存期限不得少于2年。  　　现场抽样时，抽样人员应当书面告知被抽样食品生产经营者依法享有的权利和应当承担的义务。被抽样食品生产经营者应当在食品安全抽样文书上签字或者盖章，不得拒绝或者阻挠食品安全抽样工作。  **第二十条** 现场抽样时，样品、抽样文书以及相关资料应当由抽样人员于5个工作日内携带或者寄送至承检机构，不得由被抽样食品生产经营者自行送样和寄送文书。因客观原因需要延长送样期限的，应当经组织抽样检验的市场监督管理部门同意。  　　对有特殊贮存和运输要求的样品，抽样人员应当采取相应措施，保证样品贮存、运输过程符合国家相关规定和包装标示的要求，不发生影响检验结论的变化。  **第二十一条** 抽样人员发现食品生产经营者涉嫌违法、生产经营的食品及原料没有合法来源或者无正当理由拒绝接受食品安全抽样的，应当报告有管辖权的市场监督管理部门进行处理。    **第四章 检验与结果报送**  **第二十二条** 食品安全抽样检验的样品由承检机构保存。  　　承检机构接收样品时，应当查验、记录样品的外观、状态、封条有无破损以及其他可能对检验结论产生影响的情况，并核对样品与抽样文书信息，将检验样品和复检备份样品分别加贴相应标识后，按照要求入库存放。  　　对抽样不规范的样品，承检机构应当拒绝接收并书面说明理由，及时向组织或者实施食品安全抽样检验的市场监督管理部门报告。  **第二十三条** 食品安全监督抽检应当采用食品安全标准规定的检验项目和检验方法。没有食品安全标准的，应当采用依照法律法规制定的临时限量值、临时检验方法或者补充检验方法。  　　风险监测、案件稽查、事故调查、应急处置等工作中，在没有前款规定的检验方法的情况下，可以采用其他检验方法分析查找食品安全问题的原因。所采用的方法应当遵循技术手段先进的原则，并取得国家或者省级市场监督管理部门同意。  **第二十四条** 食品安全抽样检验实行承检机构与检验人负责制。承检机构出具的食品安全检验报告应当加盖机构公章，并有检验人的签名或者盖章。承检机构和检验人对出具的食品安全检验报告负责。  　　承检机构应当自收到样品之日起20个工作日内出具检验报告。市场监督管理部门与承检机构另有约定的，从其约定。  　　未经组织实施抽样检验任务的市场监督管理部门同意，承检机构不得分包或者转包检验任务。  **第二十五条** 食品安全监督抽检的检验结论合格的，承检机构应当自检验结论作出之日起3个月内妥善保存复检备份样品。复检备份样品剩余保质期不足3个月的，应当保存至保质期结束。  　　检验结论不合格的，承检机构应当自检验结论作出之日起6个月内妥善保存复检备份样品。复检备份样品剩余保质期不足6个月的，应当保存至保质期结束。  **第二十六条** 食品安全监督抽检的检验结论合格的，承检机构应当在检验结论作出后7个工作日内将检验结论报送组织或者委托实施抽样检验的市场监督管理部门。  　　抽样检验结论不合格的，承检机构应当在检验结论作出后2个工作日内报告组织或者委托实施抽样检验的市场监督管理部门。  **第二十七条** 国家市场监督管理总局组织的食品安全监督抽检的检验结论不合格的，承检机构除按照相关要求报告外，还应当通过食品安全抽样检验信息系统及时通报抽样地以及标称的食品生产者住所地市场监督管理部门。  　　地方市场监督管理部门组织或者实施食品安全监督抽检的检验结论不合格的，抽样地与标称食品生产者住所地不在同一省级行政区域的，抽样地市场监督管理部门应当在收到不合格检验结论后通过食品安全抽样检验信息系统及时通报标称的食品生产者住所地同级市场监督管理部门。同一省级行政区域内不合格检验结论的通报按照抽检地省级市场监督管理部门规定的程序和时限通报。  　　通过网络食品交易第三方平台抽样的，除按照前两款的规定通报外，还应当同时通报网络食品交易第三方平台提供者住所地市场监督管理部门。  **第二十八条** 食品安全监督抽检的抽样检验结论表明不合格食品可能对身体健康和生命安全造成严重危害的，市场监督管理部门和承检机构应当按照规定立即报告或者通报。  　　案件稽查、事故调查、应急处置中的检验结论的通报和报告，不受本办法规定时限限制。  **第二十九条** 县级以上地方市场监督管理部门收到监督抽检不合格检验结论后，应当按照省级以上市场监督管理部门的规定，在5个工作日内将检验报告和抽样检验结果通知书送达被抽样食品生产经营者、食品集中交易市场开办者、网络食品交易第三方平台提供者，并告知其依法享有的权利和应当承担的义务。    **第五章 复检和异议**  **第三十条** 食品生产经营者对依照本办法规定实施的监督抽检检验结论有异议的，可以自收到检验结论之日起7个工作日内，向实施监督抽检的市场监督管理部门或者其上一级市场监督管理部门提出书面复检申请。向国家市场监督管理总局提出复检申请的，国家市场监督管理总局可以委托复检申请人住所地省级市场监督管理部门负责办理。逾期未提出的，不予受理。  **第三十一条** 有下列情形之一的，不予复检：  　　（一）检验结论为微生物指标不合格的；  　　（二）复检备份样品超过保质期的；  　　（三）逾期提出复检申请的；  　　（四）其他原因导致备份样品无法实现复检目的的；  　　（五）法律、法规、规章以及食品安全标准规定的不予复检的其他情形。  **第三十二条** 市场监督管理部门应当自收到复检申请材料之日起5个工作日内，出具受理或者不予受理通知书。不予受理的，应当书面说明理由。  　　市场监督管理部门应当自出具受理通知书之日起5个工作日内，在公布的复检机构名录中，遵循便捷高效原则，随机确定复检机构进行复检。复检机构不得与初检机构为同一机构。因客观原因不能及时确定复检机构的，可以延长5个工作日，并向申请人说明理由。  　　复检机构无正当理由不得拒绝复检任务，确实无法承担复检任务的，应当在2个工作日内向相关市场监督管理部门作出书面说明。  　　复检机构与复检申请人存在日常检验业务委托等利害关系的，不得接受复检申请。  **第三十三条** 初检机构应当自复检机构确定后3个工作日内，将备份样品移交至复检机构。因客观原因不能按时移交的，经受理复检的市场监督管理部门同意，可以延长3个工作日。复检样品的递送方式由初检机构和申请人协商确定。  　　复检机构接到备份样品后，应当通过拍照或者录像等方式对备份样品外包装、封条等完整性进行确认，并做好样品接收记录。复检备份样品封条、包装破坏，或者出现其他对结果判定产生影响的情况，复检机构应当及时书面报告市场监督管理部门。  **第三十四条** 复检机构实施复检，应当使用与初检机构一致的检验方法。实施复检时，食品安全标准对检验方法有新的规定的，从其规定。  　　初检机构可以派员观察复检机构的复检实施过程，复检机构应当予以配合。初检机构不得干扰复检工作。  **第三十五条** 复检机构应当自收到备份样品之日起10个工作日内，向市场监督管理部门提交复检结论。市场监督管理部门与复检机构对时限另有约定的，从其约定。复检机构出具的复检结论为最终检验结论。  　　市场监督管理部门应当自收到复检结论之日起5个工作日内，将复检结论通知申请人，并通报不合格食品生产经营者住所地市场监督管理部门。  **第三十六条** 复检申请人应当向复检机构先行支付复检费用。复检结论与初检结论一致的，复检费用由复检申请人承担。复检结论与初检结论不一致的，复检费用由实施监督抽检的市场监督管理部门承担。  　　复检费用包括检验费用和样品递送产生的相关费用。  **第三十七条** 在食品安全监督抽检工作中，食品生产经营者可以对其生产经营食品的抽样过程、样品真实性、检验方法、标准适用等事项依法提出异议处理申请。  　　对抽样过程有异议的，申请人应当在抽样完成后7个工作日内，向实施监督抽检的市场监督管理部门提出书面申请，并提交相关证明材料。  　　对样品真实性、检验方法、标准适用等事项有异议的，申请人应当自收到不合格结论通知之日起7个工作日内，向组织实施监督抽检的市场监督管理部门提出书面申请，并提交相关证明材料。  　　向国家市场监督管理总局提出异议申请的，国家市场监督管理总局可以委托申请人住所地省级市场监督管理部门负责办理。  **第三十八条** 异议申请材料不符合要求或者证明材料不齐全的，市场监督管理部门应当当场或者在5个工作日内一次告知申请人需要补正的全部内容。  　　市场监督管理部门应当自收到申请材料之日起5个工作日内，出具受理或者不予受理通知书。不予受理的，应当书面说明理由。  **第三十九条** 异议审核需要其他市场监督管理部门协助的，相关市场监督管理部门应当积极配合。  　　对抽样过程有异议的，市场监督管理部门应当自受理之日起20个工作日内，完成异议审核，并将审核结论书面告知申请人。  　　对样品真实性、检验方法、标准适用等事项有异议的，市场监督管理部门应当自受理之日起30个工作日内，完成异议审核，并将审核结论书面告知申请人。需商请有关部门明确检验以及判定依据相关要求的，所需时间不计算在内。  　　市场监督管理部门应当根据异议核查实际情况依法进行处理，并及时将异议处理申请受理情况及审核结论，通报不合格食品生产经营者住所地市场监督管理部门。    **第六章 核查处置及信息发布**  **第四十条** 食品生产经营者收到监督抽检不合格检验结论后，应当立即采取封存不合格食品，暂停生产、经营不合格食品，通知相关生产经营者和消费者，召回已上市销售的不合格食品等风险控制措施，排查不合格原因并进行整改，及时向住所地市场监督管理部门报告处理情况，积极配合市场监督管理部门的调查处理，不得拒绝、逃避。  　　在复检和异议期间，食品生产经营者不得停止履行前款规定的义务。食品生产经营者未主动履行的，市场监督管理部门应当责令其履行。  　　在国家利益、公共利益需要时，或者为处置重大食品安全突发事件，经省级以上市场监督管理部门同意，可以由省级以上市场监督管理部门组织调查分析或者再次抽样检验，查明不合格原因。  **第四十一条** 食品安全风险监测结果表明存在食品安全隐患的，省级以上市场监督管理部门应当组织相关领域专家进一步调查和分析研判，确认有必要通知相关食品生产经营者的，应当及时通知。  　　接到通知的食品生产经营者应当立即进行自查，发现食品不符合食品安全标准或者有证据证明可能危害人体健康的，应当依照食品安全法第六十三条的规定停止生产、经营，实施食品召回，并报告相关情况。  　　食品生产经营者未主动履行前款规定义务的，市场监督管理部门应当责令其履行，并可以对食品生产经营者的法定代表人或者主要负责人进行责任约谈。  **第四十二条** 食品经营者收到监督抽检不合格检验结论后，应当按照国家市场监督管理总局的规定在被抽检经营场所显著位置公示相关不合格产品信息。  **第四十三条** 市场监督管理部门收到监督抽检不合格检验结论后，应当及时启动核查处置工作，督促食品生产经营者履行法定义务,依法开展调查处理。必要时，上级市场监督管理部门可以直接组织调查处理。  　　县级以上地方市场监督管理部门组织的监督抽检，检验结论表明不合格食品含有违法添加的非食用物质，或者存在致病性微生物、农药残留、兽药残留、生物毒素、重金属以及其他危害人体健康的物质严重超出标准限量等情形的，应当依法及时处理并逐级报告至国家市场监督管理总局。  **第四十四条** 调查中发现涉及其他部门职责的，应当将有关信息通报相关职能部门。有委托生产情形的，受托方食品生产者住所地市场监督管理部门在开展核查处置的同时，还应当通报委托方食品生产经营者住所地市场监督管理部门。  **第四十五条** 市场监督管理部门应当在90日内完成不合格食品的核查处置工作。需要延长办理期限的，应当书面报请负责核查处置的市场监督管理部门负责人批准。  **第四十六条** 市场监督管理部门应当通过政府网站等媒体及时向社会公开监督抽检结果和不合格食品核查处置的相关信息，并按照要求将相关信息记入食品生产经营者信用档案。市场监督管理部门公布食品安全监督抽检不合格信息，包括被抽检食品名称、规格、商标、生产日期或者批号、不合格项目，标称的生产者名称、地址，以及被抽样单位名称、地址等。  　　可能对公共利益产生重大影响的食品安全监督抽检信息，市场监督管理部门应当在信息公布前加强分析研判，科学、准确公布信息，必要时，应当通报相关部门并报告同级人民政府或者上级市场监督管理部门。  　　任何单位和个人不得擅自发布、泄露市场监督管理部门组织的食品安全监督抽检信息。    **第七章 法律责任**  **第四十七条** 食品生产经营者违反本办法的规定，无正当理由拒绝、阻挠或者干涉食品安全抽样检验、风险监测和调查处理的，由县级以上人民政府市场监督管理部门依照食品安全法第一百三十三条第一款的规定处罚；违反治安管理处罚法有关规定的，由市场监督管理部门依法移交公安机关处理。  　　食品生产经营者违反本办法第三十七条的规定，提供虚假证明材料的，由市场监督管理部门给予警告，并处1万元以上3万元以下罚款。  　　违反本办法第四十二条的规定，食品经营者未按规定公示相关不合格产品信息的，由市场监督管理部门责令改正；拒不改正的，给予警告，并处2000元以上3万元以下罚款。  **第四十八条** 违反本办法第四十条、第四十一条的规定，经市场监督管理部门责令履行后，食品生产经营者仍拒不召回或者停止经营的，由县级以上人民政府市场监督管理部门依照食品安全法第一百二十四条第一款的规定处罚。  **第四十九条** 市场监督管理部门应当依法将食品生产经营者受到的行政处罚等信息归集至国家企业信用信息公示系统，记于食品生产经营者名下并向社会公示。对存在严重违法失信行为的，按照规定实施联合惩戒。  **第五十条** 有下列情形之一的，市场监督管理部门应当按照有关规定依法处理并向社会公布；构成犯罪的，依法移送司法机关处理。  　　（一）调换样品、伪造检验数据或者出具虚假检验报告的；  　　（二）利用抽样检验工作之便牟取不正当利益的；  　　（三）违反规定事先通知被抽检食品生产经营者的；  　　（四）擅自发布食品安全抽样检验信息的；  　　（五）未按照规定的时限和程序报告不合格检验结论，造成严重后果的；  　　（六）有其他违法行为的。  　　有前款规定的第（一）项情形的，市场监督管理部门终身不得委托其承担抽样检验任务；有前款规定的第（一）项以外其他情形的，市场监督管理部门五年内不得委托其承担抽样检验任务。  　　复检机构有第一款规定的情形，或者无正当理由拒绝承担复检任务的，由县级以上人民政府市场监督管理部门给予警告；无正当理由1年内2次拒绝承担复检任务的，由国务院市场监督管理部门商有关部门撤销其复检机构资质并向社会公布。  **第五十一条**市场监督管理部门及其工作人员有违反法律、法规以及本办法规定和有关纪律要求的，应当依据食品安全法和相关规定，对直接负责的主管人员和其他直接责任人员，给予相应的处分；构成犯罪的，依法移送司法机关处理。    **第八章 附 则**  **第五十二条** 本办法所称监督抽检是指市场监督管理部门按照法定程序和食品安全标准等规定，以排查风险为目的，对食品组织的抽样、检验、复检、处理等活动。  　　本办法所称风险监测是指市场监督管理部门对没有食品安全标准的风险因素，开展监测、分析、处理的活动。  **第五十三条** 市场监督管理部门可以参照本办法的有关规定组织开展评价性抽检。  　　评价性抽检是指依据法定程序和食品安全标准等规定开展抽样检验，对市场上食品总体安全状况进行评估的活动。  **第五十四条** 食品添加剂的检验，适用本办法有关食品检验的规定。  　　餐饮食品、食用农产品进入食品生产经营环节的抽样检验以及保质期短的食品、节令性食品的抽样检验，参照本办法执行。  　　市场监督管理部门可以参照本办法关于网络食品安全监督抽检的规定对自动售卖机、无人超市等没有实际经营人员的食品经营者组织实施抽样检验。  **第五十五条** 承检机构制作的电子检验报告与出具的书面检验报告具有同等法律效力。  **第五十六条** 本办法自2019年10月1日起施行。 |